

# 2025년 4분기 기획조정실 예산 전용 보고

《 법률지원담당관 》

## □ 관련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49조(예산의 전용)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## < 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 >

## □ 전용사유

- '25년 마을변호사 동 배치인원(136개동, 2명 → 3명) 및 정기상담일(월1회 → 월2회) 확대에 따른 상담 이용자 증가로 법률상담료 추가 확보 필요
- '민사·행정소송 등 수행'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은 '24년 대비 '25년 인지대, 송달료 등 집행액 감소로 예산이 절감되어, 해당 절감분의 일부를 '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' 사업 부족분으로 전용함

## □ 세부내용

- 전용 금액 : 15,610천원
- 전용 방법 : 단위사업 간 전용  
(증) 『무료법률서비스 운영 및 지원』 기타보상금(301-14)  
(감) 『민사, 행정소송 등 수행』 사무관리비(201-02)

## □ 예산 전용 내역

(단위 : 천원)

정책	예산과목			예산현액	전용 요구액		전용 후 예산액
	단위	세부	통계목		증	감	
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	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	민사, 행정소송등 수행	사무관리비 (201-01)	5,618,792	-	15,610	5,603,182
	법률서비스 지원 확대	무료법률 서비스 운영 및 지원	기타보상금 (301-14)	583,955	15,610	-	599,565